화성동탄2 제일풍경채 | 퍼스티어 |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견본주택 운영 및 유의사항]

- 「제일풍경채 퍼스티어」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 견본주택(http://www.동탄제일풍경채.com)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해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은 견본주택 방문가능기간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당사가 사전 안내한 해당 날짜 및 운영시간 외에는 견본주택 방문이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기간 : 당첨자의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부적격의심사항 소명을 위한 방문, 공급계약서 체결기간 등 당사가 사전 안내한 기간
    - 견본주택 방문 방법 : 「제일풍경채 퍼스티어」홈페이지(http://www.동탄제일풍경채.com) 방문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예약하신 경우에 한하여 방문이 가능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인원 : 당첨자(대리인 포함) 및 동반자 1인(자녀도 1인으로 산정) 총 2인까지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가능 기간 내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체온이 37.5℃가 넘을 경우(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 운영 예정)
    -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을 경우
    - 기타 견본주택 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자격확인서류 제출,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화상담(☎1877-5117)을 실시할 예정이오나, 간혹 통화량이 많을 경우 전화상담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의 부정확한 정보전달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해 착오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신청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고 주민등록표등 · 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지 및 도로, 단지 주변 현황

- 당해 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며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에너지 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하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는 인근 군부대 항공기에 의한 소음 발생지역입니다.
- 당해 지구 내에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등), 공급처리시설(변전소, 케이블 헤드 등), 가스공급시설 등의 공공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당해 지구 내에는 기존 공장(연구소, 물류시설 등) 및 기타시설(주유소, 법왕청)이 존치 예정입니다.
- 당해 지구 내에는 교량, 지하차도, 보도육교 등 도시시설물의 설치계획 및 주유소, 종교시설 등의 위치는 향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에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유보지 4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남측으로 도로 신설 예정으로 차량 및 보행자 소음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 · 서측 · 북측으로 근린공원(근린공원16)이 접하여 이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의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으로 신제리제2저수지(직선거리 약 0.6㎞)가 위치하고 있으니 청약 및 계약체결 전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남측으로 물류창고(직선거리 약 0.6㎞)가 위치하여, 시설물 이용 차량에 따른 소음, 교통혼잡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서측에 동탄일반산업단지(직선거리 약 4.0㎞)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 산업단지 내 수질복원센터(공공하수도시설), 집단에너지시설(지역난방시설) 등 공공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 단지 북측으로 골프장(직선거리 약 0.9㎞)이 위치하고 있으니 청약 및 계약체결 전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남서측의 동탄JC 남동측에 폐기물처리시설(크린에너지센터_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직선거리 약 3.6㎞)을 설치 · 운영 중에 있으니, 청약 및 계약체결 전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변으로 기타 유해시설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체결 전 현장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 및 도시계획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입주 후 주변 단지 및 화성동탄2택지개발지구(신주거문화타운)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주변 공동주택 및 시설물 건축(계획) 등으로 인하여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 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향후 소음영향평가 실시 후 결과에 따라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교통시설물(신호등, 교차로, 버스정류장, CCTV 등)에 대하여 시설물 위치 이전 및 추가 설치 등을 당사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도로 및 인접대지와의 레벨차이로 단지 내 · 외부 일부 구간에 조경석 또는 옹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높이, 옹벽디자인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에는 투시형 펜스 또는 조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지 내 옹벽 지지를 위해 지하 매설물이 설치될 경우 영구 점용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통신 인입을 위한 맨홀 및 시설물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조망권 침해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일부 세대는 단지 내 야간 조명 효과, 야간 차량 진출입, 주변 도로의 차량 통행에 의한 눈부심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배치 상 일부동의 저층세대 및 특정세대는 일조권의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세대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내에 비치된 단지모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학교(및 어린이집)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유입되는 초등학생은 신설 예정인 (가칭)동탄23초(직선거리 약 30m)에, 중학생은 동탄2-2중학군에 배치할 계획이며, 고등학생은 화성시 기존 고등학교 및 개교 예정인 고등학교에 배치 가능합니다. (단,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학생배치계획이 변경될 경우 그 변경 계획에 따름)
- (가칭)동탄23초의 학교설립 시기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며, 현재는 개교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개교 전까지 (가칭)동탄22초(직선거리 약 0.7㎞, 2023년 3월 개교 예정)에 임시배치할 계획입니다. 당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통학거리증가를 보완하고자 입주자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통학안전대책(통학버스 제공 등)을 수립하고 초등학교 임시배치 해지일까지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신설학교 설립계획은 교육부 재정투자심사 결과 및 학생배치계획, 교육여건변화 등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설립지연 시 입주시기 조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학생배치 계획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등 해당 기관에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는 2021.09.27.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외에도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11.24.(수)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세대구성원, 무주택기간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1.24.(수))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기타 수도권(주민등록표등본 기준,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3항에 의거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화성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2019.11.24.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는 신청자가 우선합니다.
  - ※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령(2020.06.23.)」 시행에 따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권선구 곡반정동(화성시 반정동에서 행정구역이 변경된 지역에 한함)에 계속 거주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의거 현재 주민등록표 행정구역상 "수원시"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2020.07.24.부터 1년간 "화성시" 거주자로 인정(단, 주택공급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동탄2)된 곳은 2년간 인정)하여 주택공급 대상에 포함되며, 청약홈에서 주택공급 신청 시 "화성시" 거주자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경기도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는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거주해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입국 후 7일 내 동일 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주택형 85㎡ 초과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1)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 : 부 · 모, 장인 · 장모, 시부 · 시모, 조부 · 조모, 외조부 · 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 : 아들 · 딸, 사위 · 며느리, 손자 · 손녀, 외손자 · 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 : 전혼자녀 등)
  2)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 (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 12. 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단,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 · 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 · 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을 말합니다.
-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다자녀	노부모부양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2순위)
세대주 요건	–	필요	필요	–
소득기준	–	–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 금융인증서 ③ 네이버인증서 또는 ④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 / 1 · 2순위)	○	○	○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 · 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및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봄)
-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게 됩니다.(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최하층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배정될 수 있습니다.
-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공공 · 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 청약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에 의거 본 주택의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로 선정되는 경우 당첨된 분과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그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당첨제한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청약자 중 가점제로 당첨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되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 ·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갖춘 청약자(재당첨 제한, 부적격당첨 제한 포함)의 경우에는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청약신청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에게 공급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공급세대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동탄제일풍경채.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 · 수도권(인천, 경기) · 지방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투기과열지구 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추첨으로 선정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 호수를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해서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해서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하고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물량 중 배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 · 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의 지위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및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투기과열지구인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및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 미제출로 인하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내 주택 거래신고서 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8항 에 의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외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기재 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계약자가 직접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본 아파트의 공급계약체결 시 계약자는 인지세를 전액 부담하여 납부(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등 구매)하여야 합니다.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로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추후 등기 시 소인처리)
-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 및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부동산등기(최초 분양계약자 및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 분양권 전매, 거주의무기간, 재당첨 제한 등(당첨 제한 또는 청약자격 제한 등의 기간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가장 긴 제한 기간을 적용)
  -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10년	10년

-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및 [별표 3] 제4호가목에 의거 수도권 내 공공택지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 2021.12.17.)부터 10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단, 향후 관련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거주의무기간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62조의2제1항에 의거하여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다만, 해외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봄)
- 재당첨 제한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 · 제2호 · 제4호 · 제6호 · 제7호 가목(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8호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재당첨 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 재당첨 제한 대상자의 청약 제한 :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된 자 및 당첨된 자의 세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함)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기간에 있는 분은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1순위 청약 자격 제한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당첨 제한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당첨자 본인 및 그 세대에 속한 자가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당첨 제한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권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으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분양권 매수자가 피해를 보게 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 위장전입 및 불법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사업주체는 부적격으로 의심되는 당첨자에게 문자,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미수신 또는 수신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어 자격검증 서류 제출 및 계약 일정 등에 차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이 취소된 주택의 당첨일부터 공급신청하려는 주택 지역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잔여물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안내

구 분	특별공급(다자녀, 노부모부양)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 접수(당첨자)	계약체결
일 정	2021. 12. 08.(수)	2021. 12. 09.(목)	2021. 12. 10.(금)	2021. 12. 17.(금)	2021. 12. 19.(일)~22.(수)	2021. 12. 28.(화)~31.(금)

■ 가구 및 마감재

- 세대 내 커튼박스 길이는 천장배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인조석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세대 내 가구에 적용된 도장제품은 설치 후 시간 경과 시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 대비 도막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 및 시공 상의 여건 등으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관신발장, 팬트리, 주방가구, 각 실 붙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현관창고 도어는 바깥 여닫이 형태로 설치되며, 이로 인해 내부 공간 사용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김치냉장고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확인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조적벽체(침실, 욕실, PD 등)는 공사 중 비내력 콘크리트 벽체 또는 건식벽체(경량벽체)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死)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창호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의 위치에 따라 인근 실과의 마감 레벨은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실에 소방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므로 피난에 간섭되는 물건 등을 적재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보조싱크 옵션 미선택 시 하부에 별도 배수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기본형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장 마감이 없으며, 이로 인해 일부 비확장 시 환기장치 및 각종 배관이 노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세대 발코니 외측 창호에 방충망이 설치되며, 내측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노출 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파타일로 시공될 수 있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고정형 가구 상 · 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거실 아트월,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가구 하부 걸레받이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 선택 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크기, 개폐 방향 및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천장고는 기준층 거실 기준 2.4m이며, 실외기실, 발코니, 발코니 부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창호는 주거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실시공 시 위치 및 형태, 색상,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미건립세대인 101㎡B타입은, 건립세대인 101㎡A타입과 세대 마감이 동일하며, 평면 형태에 따라 일부 마감 및 가구 구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확장세대 대비하여 가구의 제공량이 상이하므로 당사 홈페이지와 도면으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비확장세대는 유 · 무상 옵션 선택이 불가합니다.
- 세대 내 설치된 주방상판, 마감판넬 등은 본 공사 시 이음매가 보일 수 있으며 패턴, 색상, 나누기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고, 욕실문 개폐 시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내 내 욕실 천장높이는 바닥 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해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렌지후드 환기 배관으로 인해 일부 상부장의 내부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주방가구 상부에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각 세대에 설치되는 수납 선반의 경우, 사용 패턴 및 과도한 하중으로 인하여 처짐이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품질 및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적용되는 가구의 패턴글라스는 유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가구 디테일 및 이음매 위치, 도어 나누기 등은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가구 힌지, 레일, 손잡이 등 가구의 하드웨어는 본 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실외기실 출입문의 위치, 열림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손잡이, 철물 등의 하드웨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목문틀 및 천장몰딩,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 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사용되는 타일류는 특성 상 색상 및 무늬가 동일하지 않으며, 타일 나누기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 판넬류 등 벽지 외의 두께가 있는 마감재의 마감으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현관 방화문은 성능에 따라 형태 및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IoT 관련

- 사업주체와 LG U+의 IoT서비스는 입주지정기간 게시일로부터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고, 3년 후 서비스 신청 입주민에 한하여 월과금 예정입니다.
- 기본으로 제공되는 세대 내 홈네트워크 연동기기(조명, 가스밸브제어, 난방제어, 환기제어 등)외 스마트 가전제품(공기청정기, 가습기 등)은 소비자가 LG U+ IoT와 호환되는 회사 및 모델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별도로 구매하여야 연동이 가능합니다.
- IoT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입주민이 반드시 세대 내 무선인터넷(Wi-Fi AP)을 설치하여야 하고(통신사 무관), 단지 네트워크망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제어방식에 따라 일부 기기는 별도의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서비스 이용조건은 사용자와 LG U+의 계약 내용에 준하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 IoT서비스 관련하여 추후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LG U+의 사업정책에 따라 60일 전 예고 후 종료될 수 있으며, 세부 이용조건은 (주)LGU+의 계약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IoT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시 미구현 또는 성능 개선 등 서비스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환기구, 소방감지기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견본주택 내 임시 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인 · 허가 도서 및 소방법 등 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및 단지 내에 적용되는 모든 자재 및 제품은 시공 시기의 생산 여건에 따라 자재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개발 시에 한해 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타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부 계단 및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홀, 승강기의 인승,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본주택 건립 타입(101㎡A)와 견본주택 미건립 타입(101㎡B)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은 견본주택 건립 타입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도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미건립세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 상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배관, 배선 등과 출입문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카달로그, 기타 홍보물 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 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 가구(커튼, 침대, 소파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디스플레이용 조명,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분양가 미포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등) 및 도어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는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치수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선기구, 조명기구, 스마트 스위치, 일괄소등 스위치, 월패드, 세대 분전반, 통신단자함, 디지털 도어락, 현관 도어폰 등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및 기능 개선을 위해 제품 사양, 위치,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는 추가선택품목을 적용하여 시공하였으며, 품목별 옵션 선택여부에 따라 콘센트, 스위치, 조명 등의 타입 및 수량,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는 형태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주동 및 저층부의 입면의 색상, 형태, 조명 연출은 실시공 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당사 홈페이지는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철거 또는 폐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또는 폐쇄 전 견본주택 내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 http://www.동탄제일풍경채.com

■ 견본주택 :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99번지(우_18445), 화성동탄2 제일풍경채 퍼스티어 견본주택

■ 분양문의 : 1877-5117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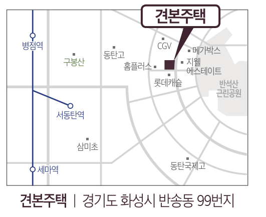

1877-5117

총 308세대　101㎡A 155세대 / 101㎡B 153세대

시행 웰메이드 개발　시공 제일건설(주)

견본주택 |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99번지